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구로구 제1선거구,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상열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
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
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안전진단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, 안전진단
비용의 일부를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
것입니다.

- 아울러,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개발·재건축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하고,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